

#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고찰

## —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중심으로 —

박 용 속\*

### 목차

---

- |                           |                       |
|---------------------------|-----------------------|
| I. 들어가며                   | III.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주요내용 |
| II. 중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 | IV. 결론에 갈음하여          |
- 

### I 국문초록 I

2020년 10월, 중국에서는 제13대 전국인민대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판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심의·공표하였다.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첫 전문 입법으로서 전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국가 사이버 개발주간 이후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안”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인민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실적 관심사이며, 이러한 이유로 본 초안의 성립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라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중국에 자회사를 둔 우리 기업은 물론, 역외적용

---

\*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 법학박사

논문접수일 : 2021. 1. 11., 심사개시일 : 2021. 1. 29., 게재확정일 : 2021. 2. 15.

#### 4 인권법평론 제26호(2021년)

으로 인하여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고 국내를 거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종 제정까지 지속적인 주시와 제정 및 시행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II)를 개괄해 본 다음,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주요내용(III)을 중심으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근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중국개인정보보호법 초안,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 개인정보의 역외제공,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정보주체, 과징금

## I. 들어가며

2020년 10월 중국에서는 제13대 전국인민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up>1)</sup>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판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个人信息保护法草案,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라 함.)」을 심의하고 공표하였다. 이후 해당 초안은 10월 22일부터 전국인민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11월 19일까지 의견수렴절차(public

---

1)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 약칭은 전인대(全人大)로, 당과 국무원(정부)의 결정을 추진하는 형식적 의사결정기구다.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국가 예산·결산 심사 및 승인 등을 행하며 국가주석·부주석·중앙군사위주석·국무원총리·최고인민법원장·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을 선출한다. 상설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어 전인대의 소집, 법률의 해석, 제정 등 전인대가 위임한 각종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전인대 밑으로는 성(省), 현(县), 시(市), 구(区) 등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있는데 하급 인민대표대회가 한 급 위인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순차적으로 선출, 최후로 전인대가 구성된다. 대표의 임기는 5년이며 연 1회 회의를 연다.

comment)가 실시되었다.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첫 전문 입법으로서 전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총 8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의 돌출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엄격한 제도와 엄격한 표준, 엄격한 책임을 바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나아가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생태계를 보고하고자 한다. 즉,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 권리와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II)를 개괄해 본 다음,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주요내용(III)을 중심으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근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중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

### 1. 중국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

중국에서는 2004년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각료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프라이버시 프레임 워크(APEC Privacy Framework)」 채택함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제정작업은 성공하지 못하

였다.<sup>2)</sup> 따라서 이번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공표되기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법령은 존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야별로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이 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에서는 이제까지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11월 7일 제정·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하, 네트워크안전법이라 함)」<sup>3)</sup> 제7장 부칙 제76조 제5호의 규정 등이 있다. 「네트워크안전법」,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決定)」, 「정보안전기술 공공 및 상용서비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信息安全技术公共及商用服务信息系统个人信息保护指南)」,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规定)」, 「건강정보의 행정조치」 등의 정부기관이 정식으로 공포한 문건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2) 개인정보보호법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미 2003년에 국무원 소속의 ‘前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프로젝트’를 위탁하여, 周漢華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팀에서 2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문가 제안서’를 완성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제안서는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으로 완성되어 국무원에 제출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3)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용숙,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일고찰”, 「강원법학」 제53권 참고.

〈 중국 법 제도 상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

구분	정의
네트워크안전법	전자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기록되는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개인생체인증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정보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결정	인민 개인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자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안전기술 공공 및 상용서비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특정한 자연인과 관련되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해당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사용자(성명, 생년월일, ID, 거주지 등)를 식별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통신사업관리자에 의해 수집된 서비스 사용위치 및 시간정보
건강정보의 행정조치	인구통계학 정보, 의료 및 건강진료 정보, 건강 상태 정보와 같은 국민들의 건강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약 41개 정도가 존재하며, 행정법규의 경우에는 약 30개, 그리고 약 200여개의 행정규장이 규정되어 있다.<sup>4)</sup> 이처럼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적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법 또는 기본법은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대표적 일반법과 개별법에

4) 蒋平, “我国个人信息法律保护现状及完善途径”, 「公安研究」, 2013年 第8期, 第51页.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 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반법

####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憲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8조<sup>5)</sup>는 중국 인민의 인격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 인민 인격권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6)7)</sup>

#### (2) 형법(刑法)

형법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2009년 중국 형법 제7차 개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런데, 2015년 제9차 개정에서 동조가 개정됨에 따라 처벌대상이 종전의 ‘국가기관 또는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기타 분야의 사업자의 직원’(신분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인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고 혹은 부정하게 제공하는 자’(비신분법)으로 확대되고, 벌칙도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의 병과로 한 층 엄격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법규에 위반하여 직무수행 또는 역무제공의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부정하게 제공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sup>8)</sup> 그리고 개인정보

---

5)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8조(인격의 존엄)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민에 대하여 모욕, 비방 및 무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김학성·박용숙, 세계 각국의 헌법전, 북스힐, 2018, 289쪽 참고)

6) 김종우, “빅데이터 시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률제도 현황과 입법과제 연구”,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268쪽.

7) 李建国(第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副委员长): 《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草案)的说明〉—2017年3月8日在第十二届全国代表大会第五次会议上》.

를 훔치거나 부정하게 입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한 종업원과 회사의 책임자 또는 직접책임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형법 제9차 개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안전관리의무 이행 거부죄<sup>9)</sup>가 신설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에 관한 인터넷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관리 담당부서로부터 개선조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결과로서, ① 위법한 정보가 대량으로 확산되었을 때, ②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③ 범죄증거가 훼손되어 상태가 중한 때, ④ 기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3) 민법(民法)

민법총칙(民法总则)과 민법에서는 ‘개인정보 권리(個人資訊權)’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個人資訊保護)’라는 표현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부가 개인정보를 특정한 인격권으로까지 보지는 않지만, 인민의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0)</sup>

#### 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별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대표적 개별법으로는 「네트워크안전법」과 「데이터안전법(초안)」을 들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안전법은 2015년 제정작업이 시작되어 2016년 11

8) 「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九)」 제17조.

9) 「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九)」 제28조.

10) 王利明主編, 《中華人民共和國民法總則詳解》(上), 中國法制出版社, 2017年, 465頁.

월 7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결의로 최종 법안이 통과되고,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36조에서는 핵심 정보인프라시설의 운영자가 중국 국내(境内)에서 운영 중에 수집·생성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국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역외에 저장 또는 국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경우, 국가 정보망 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함께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 평가(安全评估)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안전법(초안)은 2020년 7월 3일에 공포되고 의견 수렴절차를 마친 것으로 데이터 안전보호를 위한 단행법이다. 이 데이터안전법(초안)은 앞으로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함께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장 중요한 법률로 위치할 것이다. 특히, 데이터안전법(초안)에서는 데이터의 역외이전의 감독 관리와 관련된 요구를 분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법안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법전은 존재하지 않았다.<sup>11)</sup> 즉, 「형법」, 「민법」, 「네트워크안전법」<sup>12)</sup> 등의 각 법령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었다.

물론,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최근 갑자기 시작된 일은 아니다. 2003년 이미 국무원의 ‘前 공업정보화

11) 「偏東風第34回『金融機関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の実務』と中国における個人情報の保護」ザ・ローヤーズ 2016년 7月号 62頁.

12) 박용숙, 앞의 논문 참조.

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전문가에 위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문가 제안을 기초하여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이것은 2005년 완성되어, 국무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sup>13)</sup>로 개인정보보호법전의 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20년의 입법계획에 개인정보보호법전이 열거된 시점에서, 어디까지나 「계획」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 법률로서 공포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견해가 다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공포된 것은 바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전의 입법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는 2020년 9월 중국이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data security initiative)'<sup>14)</sup>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중국에서의 인터넷 사용자는 9억 명으로, 400만개 이상의 웹사이트, 300만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고 한다.<sup>15)</sup> 이처럼 인터넷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이에 따라 사이

13)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프라이버시 프레임 워크(APEC Privacy Framework)」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명 GDPR)과 달리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9개의 원칙(이하, 9개의 원칙이라 함.)'을 각 APEC 회원국의 국내법에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는다. 즉 APEC 각국은 '9개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자국의 상황에 따라, 입법·행정·산업계의 자주규제 등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작업을 서둘러 실시해야 할 외압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또한 '9개의 원칙'의 일부 내용은 중국의 정치사회체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열람·정정의 원칙' 등이 그러하다. 결국,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빠른 성립의 저해요소로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14) 이는 중국의 IT기업을 배제한 미국의 '5G 클린페이스' 정책에 대응해 중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기준이다.

15) [http://www.cnsa.cn/index.php/infomation/dynamic\\_details/id/138/type/1.html](http://www.cnsa.cn/index.php/infomation/dynamic_details/id/138/type/1.html)

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2020년은 전 세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의 유행, 즉 팬데믹 사태로 공중 보건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16)</sup> 또한 중국 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긴급대응센터(CNCERT/CC)<sup>17)</sup>가 공개된 「2020년 상반기 사이버 보안 감시 데이터 분석보고」에 의하면, 중국을 향한 악성 코드의 57.4%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호스트의 제어를 목적으로 한 트로이 목마, 좀비 봇 공격의 33.5%는 미국에서 제어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전국인민대회는 이러한 국내·외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Ⅲ.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주요 내용

#### 1. 주요 개념의 정의

##### 가. 개인정보(个人信息)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4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

(2020.12.29. 최종접속)

16) <http://www.npc.gov.cn/npc/c30834/202010/2eb97b6531ed499eb23553faf5c3c764.shtml> (2020.12.29. 최종접속)

17) 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Team/Coordination Center of China.

18) 国家计算机网络应急技术处理协调中心, 2020年上半年我国互联网网络安全监测数据分析报告, 2020.9.

[https://www.cert.org.cn/publish/main/8/2020/20200926085042652505447/20200926085042652505447\\_.html](https://www.cert.org.cn/publish/main/8/2020/20200926085042652505447/20200926085042652505447_.html) (2020.12.29. 최종접속)

정의하고 있다.

제4조 ① 개인정보는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된, 이미 식별되었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각종정보를 의미하는데, 익명화처리 후의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익명화는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기존 정보로 복원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69조 제4항).

나. 개인정보처리(个人信息处理)와 개인정보처리자(个人信息处理者)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4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②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존, 사용, 가공, 전달, 제공, 공개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69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69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처리목적, 처리방법 등의 개인정보 처리 사항을 결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 민감개인정보(敏感个人信息)

민감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29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② 민감개인정보란 한 번 누설 또는 적법하지 않게 사용되면 특정된 개인이 차별을 당하거나 신체, 재산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하며, 인종, 민족, 종교신앙, 개인의 생물적특징, 의료건강, 금융계좌 및 개인행적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 2. 법의 적용 범위 : 역외적용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무시할 내용이 아닐 것이다.

역외적용 규정으로 인해 인터넷이나 기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등으로 중국과 거래를 하는 기업 등은 중국거점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네트워크안전법」 또는 「데이터안전법(초안)」 등 많은 법령에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진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3조 제1항은 “조직 및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境内)<sup>19)</sup>에서 개인(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处理)하는 활동에 대해, 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중국의 역내에서의 처리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역외적용 역시 규정하고 있다.

19) 원문에는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境内”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境外”는 일반적으로 “역외”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역외적용이란 단어를 사용하겠다.

제3조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이 이하에 열거하는 상황에 하나를 포함한다면, 본법을 적용한다.

1. 국내의 개인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국내의 개인의 행위를 분석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3.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그 밖의 상황

이것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고 함) 제3조 제2항<sup>20)</sup>과 비교하여, 모니터링(감시)과 분석·평가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법문상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되는데 향후 가이드라인 등에서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덧붙여,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5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역외적용되는 외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대표자 등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52조 본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전문기구를 설치 또는 대표자를 지정하고, 이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나아가 해당기구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연락방법(연락처) 등을 개인정보보호 전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0) GDPR 제3조 ② 본 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경우,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유럽연합 역내에 거주하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적용된다.

- (a) 개인정보주체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유럽연합 역내의 개인정보주체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
- (b)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

이 조항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sup>21)</sup> 및 GDPR 제27조<sup>22)</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내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대리인 지정의무’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역외기업에 직접벌칙 등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 
- 2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22) GDPR 제27조(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대리인)
- ① 제3조②가 적용되는 경우,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는 유럽연합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 ② 이 의무는 다음 각 호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부정기적인 처리로서, 제9조①의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제10조의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처리의 성격, 정황, 범위 및 목적을 고려할 시 자연인의 권리 및 자유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b) 공공당국 또는 기관
  - ③ 대리인은 개인정보주체가 거주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행동이 모니터링 되는 회원국 중 한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 ④ 대리인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의해 위임되며, 관리자 또는 처리자와 함께,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감독기관 및 개인정보주체와 교섭해야 한다.
  - ⑤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대리인 지정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본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정도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42조).

제42조 역외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개인정보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 공공이익에 위해를 가할 개인정보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가 인터넷 정보부분은 그것을 개인정보제 공제한 목록 또는 금지 목록에 열거하고, 그것을 공고하며, 해당자에 대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사항 등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한 결과에 대한 공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sup>23)</sup>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2020년 6월 5일) 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sup>24)</sup>에 추가된 내용과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GDPR과 유사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3)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24)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四十二条(勧告及び命令) ④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命令を受けた個人情報取扱事業者等がその命令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 가.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의 명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5조~10조는 처리에 관하여 적법·정당성·신의성실의 원칙(제5조), 최소사용의 원칙(제6조), 공개·투명성의 원칙(제7조), 정확성의 원칙(제8조), 책임·안전성 확보의 원칙(제9조) 및 법령준수·국가안전·공공이익보호의 원칙(제10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 ① 적법·정당성·신의성실의 원칙(제5조) :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법하며 정당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기 또는 오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 ② 최소사용의 원칙(제6조) : 개인정보의 처리는 명확하며 합리적 목적을 구비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또한 처리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처리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공개·투명성의 원칙(제7조) : 개인정보의 처리는 공개 및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칙(처리규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정확성의 원칙(제8조) : 처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또한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 ⑤ 책임·안전성 확보의 원칙(제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또한 그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⑥ 국가안전·공공이익보호의 원칙(제10조) :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국가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개인정보의 처리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은 GDPR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과 유사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신뢰를 통한 자

유로운 정보이동(DFFT : Data Free Flow with Trust)을 지향<sup>25)</sup>하고 자 하는 최근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국가안전을 강조하는 중국의 독자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옵트인(opt-in)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13조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옵트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 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② 개인정보 주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 또는 수행에 필요한 경우
- ③ 법이 규정한 직책 또는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돌발적인 공중보건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등 긴급한 비상상태에서 개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만 비상상태의 해제 후 정보처리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sup>26)</sup>)
- 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 여론 감독 등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⑥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 상황<sup>27)</sup>

25) 개인정보보호법초안 제1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처리활동을 규범화하며,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질서 있는 자유이동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26)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19조 제2항.

27)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19조 제1항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설정하는 등 고지 의무를 면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은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며, 내용면에서도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GDPR 제6조<sup>28)</sup> 제1항 (f)호와 같이 “정당한 이익”에 상당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GDPR보다도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 다. 동의 철회권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주체 본인이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행해진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대해, 개인은 그 동의를 철회할 권한을 가진다.

---

28) GDPR 제6조(처리의 적법성) ① 개인정보 처리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고 그 범위에서만 적법하다.

- (a) 개인정보 주체가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한 경우
  - (b) 개인정보 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전 개인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 (c) 컨트롤러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 (d)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 (e) 공익을 위하여나 컨트롤러의 공식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
  - (f)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우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정보 주체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f)호는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러한 동의를 철회를 이유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케팅 목적의 이용에 일단 동의한 사용자가 그 동의를 철회한 경우, 사업자는 그 서비스 제공을 종료해서는 아니된다. 즉 서비스는 제공하면서, 그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경우”의 범위의 해석에 따라서는 실무에서 동의 체계(scheme)의 이용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이 그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철회한 것을 이유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제3자에의 제공

제3자에의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24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개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규약에의 포괄적 동의 가운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이라는 사항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와 유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제24조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그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 제3자의 신분, 연락방법, 처리목적, 처리방법 및 개인정보의 종류를 고지하고, 개인의 개별적 동의(單獨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제3자는 전술한 처리목적, 처리방법 및 개인정보의 종류 등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제3자가 원래의 사용목적 또는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개인에게 고지하여 그 동의를 취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마.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25조에서는 프로파일링 등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투명도 및 처리결과에의 공정성·합리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개인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그 권리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방법에만 의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GDPR 제22조 제1항<sup>29)</sup>과 유사한 내용으로, AI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25조 제2항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상업적 마케팅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적 특징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항목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A가 과거 인터넷 서점에서 자동차 잡지를 구매한 이력(개인정보)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 방법으로 자동

29) GDPR 제22조 ① 개인정보 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차에 관한 책에 대한 정보를 A에게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와 관련한 책 이외의 일반 서적에 관한 정보(A의 개인정보나 개인적 특징에 근거하지 않는 일반 정보)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바. 정보주체의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44조 이하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① 정보처리에 대한 알권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타인의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권리(제44조)
- ②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 열람할 수 있는 권리(제45조)
- ③ 자신의 개인정보의 오기 또는 미완비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제46조)
- ④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제47조)
- ⑤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설명과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제48조)

#### 4. 개인정보의 국내보존의무 및 역외이전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 제37조<sup>30)</sup><sup>31)</sup>에서는 데이터의 국내보존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

30) 네트워크안전법에서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境内)에서 운영 중에 수집·생성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국내에 저장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외에 저장 또는 국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경우, 국가 정보망 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함께 제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평가(安全评估)를 진행해야 한다. 별도로 규정된 법률·행정 법규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1) 박용숙, 앞의 논문, 59-61쪽 참조.

호법 초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0조 핵심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이 규정하는 수량에 도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개인정보를 역내에서 보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분명하게 역외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터넷정보 당국에 의한 안전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인터넷 정보부문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좋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즉, ① 핵심정보인프라시설(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II) 운영자<sup>32)33)</sup>인 경우, 및 ②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정보부문이 규정하는 수량에 도달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국내보존의무 및 역외이전에 있어서 안전평가의 합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터넷정보 당국의 안전평가를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38조).

첫째, 국가인터넷 정보 당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둘째, 역외 이전처(개인정보수취인)와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수취인에게 개인정보처리 활동이 본법에서 규정하는

32)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안전법의 내용대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하위규범에서 별도로 규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33)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ENISA의 CI(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된다(정태인·김주영·김원, “중국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27권 제5호, 2017, 59쪽 참조).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달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 경우  
 셋째,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인터넷정보 당국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조건

그리고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할 때에는, 개인에 대한 역외 이전처(개인정보수취인)의 신분, 연락방법(연락처), 정보처리 목적, 처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수취인에 대하여 본 법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 등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사전 동의(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39조). 즉,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역외 이전처(개인정보수취인)와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수취인에게 개인정보처리 활동이 본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달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38조 제3호에 근거하여, 중국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 등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 이전에 대한 내용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나아가, 제43조에서는 “어떤 국가 및 지역이라도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금지, 제한하거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근 틱톡(TikTok) 등의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하므로,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문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5.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가. 보호조치 채택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처리의 목적, 처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초래할 수 있는 결과,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 노출, 절취, 변경, 삭제되는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① 내부관리제도 및 실무규정의 제정(제50조 제1호)
- ②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나누어 관리(제50조 제2호)
-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식별화 등의 안전기술조치 강구(제50조 제3호, 제69조 제3호)
- ④ 합리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조작권한을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제50조 제4호)
- ⑤ 개인정보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제50조 제5호)
- ⑥ 개인정보처리 수량이 국가인터넷 정보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준에 도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감독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의 이름·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 전담 당국에 신고해야 함(제51조)

### 나. 특정정보 처리 시 리스크 평가 진행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대해 사전에 리스크 평가를 행하며 또한 처리상황을 기록해야 한다(제54조 제1항).

- ① 민감개인정보의 처리
- ② 개인정보를 사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실시(프로파일링)
- ③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제3자에의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공개
- ④ 역외로의 개인정보의 제공
- ⑤ 기타 개인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활동

리스크 평가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4조 제2항).

-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방법 등의 합법하며 정당하고 필요한가?
- ② 개인에 대한 영향 및 리스크 발생 가능성
- ③ 채택한 안전보호조치의 적법성, 유효성 및 리스크 정도에 상응하는가?

그리고 해당 리스크 평가보고서 및 처리상황 기록은 적어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제54조 제3항).

#### 다. 개인정보가 유출(泄露)<sup>34</sup>된 경우의 구제 및 통지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 전담 당국 및 정보주체에 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55조 1항).

- ①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 ② 누설된 개인정보의 종류 및 발생 가능한 위해
- ③ 이미 취한 구제조치

34) 원문에서는 '누설되어 탄로남'이란 뜻을 가진 '설로(泄露)'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에서 사용하는 '유출'이라는 단어로 해석함.

- ④ 정보주체가 스스로 침해감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조치
-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연락방법(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로 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사안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전담 당국이 개인정보의 유출이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통지를 명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55조 제2항).

본 조항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신설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sup>35)</sup> 및 GDPR 제33조 제1항<sup>36)</sup>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해

- 
- 35)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GDPR 제33조(감독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①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러는 부당한 지체 없이, 가급적 이를 알게 된 후 72시간 내에,

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리고 GDPR에서는 72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하도록 규정된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즉시(立即)”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 6. 제재 사항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규정에 필요한 안전조치·보호조치·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전담 당국의 시정명령 또는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하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62조<sup>37)</sup>). 위반 시 처분 가능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정명령 또는 경고
- ② 위법소득의 몰수
- ③ 법인에 대해서는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직접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1만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④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천만 위안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직접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⑤ 일정기간 휴업 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

제55조에 따라 감독기관에 해당 개인정보의 침해를 통지해야 한다. 단, 해당 개인정보의 침해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2시간 내에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동봉해야 한다.

37) 해당 조문의 번역문 가운데 ‘과태료’로 표기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위법소득의 몰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과징금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sup>38)</sup>와 그 맥을 같이 한다.

- 
- 38)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이 밖에도, 본법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있으면, 관계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신용기록에 기재되고 공표된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63조). 그리고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정보주체로 그로 인해 받은 실제 손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와 같은 실제 손해액 또는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65조).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의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검찰, 개인정보보호 전담 당국 및 국가인터넷정보 전담 당국은 본 법에 근거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66조).

#### IV. 결론에 갈음하여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국내법과 구별된다.

둘째, 이른바 GDPR형이라 할 수 있는 동의에 대한 엄격한 제약 등을 설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셋째, 역외 적용의 기준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국외전송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넷째, 데이터의 국내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정부의 강한 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국가 사이버 개발주간 이후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안”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인민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요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중국 국민 사이에서도 현실적 관심사이며 이러한 이유로 본 초안의 성립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라 생각된다.<sup>39)</sup>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중국에 자회사를 둔 우리 기업은 물론, 역외적용으로 인하여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고 국내를 거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종 제정까지 지속적인 주시와 제정 및 시행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

39) [http://www.cac.gov.cn/2019-09/16/c\\_1570162524717095.htm](http://www.cac.gov.cn/2019-09/16/c_1570162524717095.htm) (2020.12.29. 최종접속)

## 참 고 문 헌

- 国瀚文·李東原, “중국 데이터 요소 정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동향”,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0.
- 김종우, “빅데이터 시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률제도 현황과 입법과제 연구”,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2019.
- 김학성·박용숙, 세계 각국의 헌법전, 북스힐, 2018.
- 박용숙,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일고찰”, 「강원법학」 제53권, 2018.
- 손한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 고찰”, 「강원법학」 제53권, 2018.
- 정태인·김주영·김원, “중국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27권 제5호, 2017.
- 谢远扬, 《个人信息的私法保护》, 中国法制出版社, 2016年.
- 孙宪忠, 《关于尽快制定我国〈个人信息保护法〉的建议》, 中国社会科学网, 2017年.
- 张 彤, 《论民法典编纂视角下的个人信息保护立法》, 《行政管理改革》, 中共中央党校, 2020年 第2期.
- 张新宝, 《我国个人信息保护法立法主要矛盾研讨》,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2018年5月.
- 赵旭东主编,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释义与原理》, 中国法制出版社, 2018年.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草案)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日本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https://www.dataguidance.com/sites/default/files/china\\_draft\\_personal\\_data\\_law.pdf](https://www.dataguidance.com/sites/default/files/china_draft_personal_data_law.pdf)

34 인권법평론 제26호(2021년)

[http://www.cnsa.cn/index.php/infomation/dynamic\\_details/id/138/type/1.html](http://www.cnsa.cn/index.php/infomation/dynamic_details/id/138/type/1.html)

<http://www.npc.gov.cn/npc/c30834/202010/2eb97b6531ed499eb23553faf5c3c764.shtml>

[http://www.cac.gov.cn/2019-09/16/c\\_1570162524717095.html](http://www.cac.gov.cn/2019-09/16/c_1570162524717095.html)

[https://www.cert.org.cn/publish/main/upload/File/2020Report\(2\).pdf](https://www.cert.org.cn/publish/main/upload/File/2020Report(2).pdf)

<https://gdpr.kisa.or.kr/gdpr/static/gdprProvision.do>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9756&page=1&value=&type=&nownum=0](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9756&page=1&value=&type=&nownum=0)

<Abstract>

##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PARK, Yongsook\*

In October 2020, China held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deliberated and proclaimed the 2020 edition of the “Draf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irst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as the first professional legisl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President Xi Jinping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need for “People's Cyber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otection of People'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in Cyberspace” since the 2019 National Cyber Development Week. The will to protect is clearly reveal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advanced information is a real concern among the Chinese people, and for this reason, the establishment of this draft is considered to be the near future, not far away.

The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inevitably important not only to Korean companies that have subsidiaries in China, but also to companies that do not have subsidiaries in China and operate business based in China due to application outside the countr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monitoring until the final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eparations to enable rapid response to enactment and enforcement.

Therefore, this paper first outline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

\* Assistant professor/Ph.D. in Law,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And, focusing on the main contents of the 2020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looked at the recent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Key Words** :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raft), personal information, Rules for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Rules for Cross-border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blig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Rights of Individuals i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ctivities, Legal Responsibility